

계약학과(금융보안학과 금융보안정책전공) 협약서

고려대학교(이하 "학교"이라 한다)와 업체명: _____(이하 "산업체"라 한다)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고려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계약은 "산업체"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"산업체"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"학교"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 2 조(학과 명칭, 학위과정, 학생정원) ①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는 석사과정으로 '금융보안학과 금융보안정책전공'이라 한다.
② 학과의 학생정원은 25명으로 한다.

제 3 조(학생 선발·입학)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재직된 "산업체"의 소속직원 중 "산업체"가 추천한 자로서, "학교"는 "학교"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 을 허가한다.

제 4 조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 및 수업)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"학교"와 "산업체"가 협의하여 편성하고, 수업은 출석 수업으로 한다.

제 5 조(학사관리) "학교"는 "산업체"에게 학생의 출결사항, 성적 등 학업상황을 고지한다.

제 6 조(등록금 부담) ①등록금은 교육부의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라 "산업체"가 50% 이상을 부담한다.
②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"산업체"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.

제 7 조(기타사항)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려대학교 학칙,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·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,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"학교"와 "산업체"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,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월 일

고려대학교

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

업체명 _____

주 소 _____

정보보호대학원장 이 상 진 (인)

(인)